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2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유용원 · 안철수
김은혜 · 이현승 · 김선교
고동진 · 박충권 · 엄태영
김승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군 조직은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희롱·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는 신고 지연 및 은폐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함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과 그 역할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 지원의 범위와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실정임.

이에 성(性)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수행 중인 상담·법률조언·의료지원 등 각종 피해자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함.

아울러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상관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 외에도 군내 성(性)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

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(안 제42조의2, 제43조제2항 및 제43조의2)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2(성(性)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) 성희롱·성추행 및 성폭력 등 성(性)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제41조제2항에 따른 성(性)고충 전문상담관
2.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소속 공무원
3. 각 군 성고충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

제4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군인은 성희롱·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(性)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성(性)관련 피해자 보호 조치 등) ① 군인은 성희롱·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(性)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성(性)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상담, 법률조언, 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제42조의2(성(性)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) 성희롱·성추행 및 성폭력 등 성(性)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- 제41조제2항에 따른 성(性)고충 전문상담관 -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- 각 군 성고충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
제43조(신고의무 등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43조(신고의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군인은 성희롱·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(性)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④ ----- 제1항 및 제2항-----

-----.

제43조의2(성(性)관련 피해자 보호 조치 등)

① 군인은 성희롱·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(性)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성(性)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상담, 법률조언, 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.